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경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546

발의연월일: 2022. 11. 30.

발 의 자:정경희·권명호·김미애

김선교 · 김성원 · 박대수

박성중 · 배준영 · 이태규

최연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조는 유해업소의 종류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6조제1 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는 2016년에 삭제된 조문이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하여 유해업소로 분류되어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유해업소와 관련한 인용조문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개정하여 법률 개정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 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 (안 제5조제4항). 법률 제 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하여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	제5조(교육환경의 정화 등)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	4
해업소의 종류는 <u>「학교보건</u>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	
나 <u>시설(당구장,</u> 만화가게 및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	하는 영업소 및 같은 법 제2조
<u>소는 제외한다</u>)을 갖춘 영업소	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
를 말한다.	<u>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u>
	제공업과 「식품위생법 시행
	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업을 동일한 장소에
	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소에 한
	<u>하여 제외한다</u>)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